



제415회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76호)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09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10
1. 개요	10
2. 검토사항	12
※ 참고 1. 미국·EU의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처분 사례	19

I. 제안 및 회부

1.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076호)

가.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2.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109호)

가.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57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6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이해민의원안(의안번호 제00076호):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주 문

2023년 11월 라인 메신저의 일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구조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범위의 제재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해당 사안은 민간 기업 간의 협상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선 외교 문제로 불거졌음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가 경쟁력과 기술 탈취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일 행위’로 규정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에 유리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2003년 상대국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내국인과의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고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포함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사전협의 규정에 따라 WTO 제소나 ISDS에 앞서 신속 대응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먼저 언급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일본 정부는 라인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 문제가 되니 그 근거를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까지 새로 통과시키며 라인 야후 강탈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 까지 주는 것은 우리나라 IT주권을 포기하고 IT외교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오는 7월 1일을 넘겨도 지분 매각요구는 살아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정당한 우리 IT 주권을 지키고, 민간 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강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항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굴욕적인 외교 참사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력·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관련 기술문제에 대해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IT 기술을 침탈 시도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길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라인야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단 1주라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도래함.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게 되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며,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한국의 직원들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하에 놓이게 될 것임.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의 고용불안과 더불어 기술력과 인력유출

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또한 글로벌 진출 실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 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 기업을 향한 비합리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굴욕적 외교 참사에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황정아의원안(의안번호 제00109호):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주 문

일본 정부는 라인에 대한 총무성 행정지도의 목적이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행정지도에는 ‘경영 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하며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행정지도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난 배경을 ‘위탁처에 대한 관리감독 미진’이라고 꼽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행정지도에 담기지 않았다.

게다가 라인야후가 네이버 출신이자 라인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CPO마저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고, 소프트뱅크도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매입하려고 하며 사실상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강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통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강탈 시도로 인해 기술 유출, 고용 불안, 국내 IT기업의 해외 진출 걸림돌과 IT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같은 악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5·26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가 “한일관계랑 별개 사안”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일본의 입장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 같다”며 일본의 거짓말을 용인했다.

라인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서비스에 성공한 IT 플랫폼이자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각지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금융, AI 등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탈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을 일본 정부에 경고하고, 대한민국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라인 강탈 야욕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 기업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라인은 2011년 출시한 메신저로 페이와 웹툰, 쇼핑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임. 특히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10억 명에 달하는 IT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했음.

네이버는 2021년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인 A홀딩스를 세웠고, A홀딩스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가 되었음.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음.

라인야후 측이 행정지도에 대해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를 통해 7월까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였음.

이에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입을 공식화하고,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네이버 출신 CPO는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게 됨.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 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또한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경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가. 라인야후 지분 구조

- 라인은 NHN재팬(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에서 '11년 출시한 메신저로 일본 내 사용자가 9천6백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임.
- 라인 메신저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21년에 네이버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측 야후재팬이 절반씩 출자한 지주회사 A홀딩스가 출범했고 이 회사가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함.
- 2024년 기준 라인야후 시총은 약 25조 7,000억원 규모로 이 중 네이버 지분이 8조 3,500억원 수준임.
- 현재 라인은 인프라 운영 관련 업무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나. 주요 경과

- 일본 정부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야후의 하청업체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라인야후 이용자 정보 약 51만건이 외부로 유출('23.11월)됨.
-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야후는 직원·기타 인사정보 처리 등을

위해 사내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네트워크 접속이 허용됨

- 일본 총무성은 사고 원인으로 네이버에 대한 시스템 과의존과 위탁처(네이버클라우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며 ① 안전 관리조치 및 위탁처 관리 재검토, ②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차원에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③ 이용자 대응 철저 등을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24.3.5.)를 실시함.

-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를 재검토할 것도 포함함.

- 이에 라인야후는 ① 네이버 업무위탁 단계적 중단(~'26), ② 사이버 보안대책 수립, ③ A홀딩스에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책을 보고('23,4.1.)함.

< 라인야후 주요 대책 >

- ① (안전 관리조치) ▲네이버로부터 불필요한 접속 차단, 다요소 인증 등 도입, ▲네이버클라우드에 감사권 등을 규정한 각서 체결, ▲인증 기반 시스템 단계적 분리(~'26),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 등
- ② (보안 거버넌스) ▲모회사(A홀딩스)에 자본통제 관련 관계 재검토 요청,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이사회 설립·거버넌스 대책 검토 등
- ③ (이용자 대응) 라인야후 內 사건 관련 정보 제공 페이지 신설 등

- 그러나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기존 행정지도 내용의 재검토와 대책 강화의 가속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행정지도('24.4.16.)를 실시함.

- 동 행정지도에는 7월 1일까지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포함함.

2. 검토사항

- 결의안은 우리나라 IT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려는 취지임.
- 이해민의원안 주문의 경우 크게 1)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강요 행태에 대한 규탄 및 행정지도 철회 촉구, 2)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운영주권 침해에 대한 사과 촉구, 3)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안 채택 및 관련 조사 활동에 대한 적극 협력 결의로 이루어짐.
- 황정아의원안 주문의 경우 크게 1) 일본 정부의 경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 2) 일본 정부의 민간 기업 강탈 시도에 대한 사과 및 행정지도 철회 촉구, 3)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합당한 상응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 4)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로 이루어짐.
- 2024년 7월 1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는 단기적 지분 이동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¹⁾된 바 있으나, 이후 일본 정부의 반응 및 중장기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반복적 지분 매각 논란 발생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보임.

- 이번 일본 정부의 지분관계 재검토 관련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내용적·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이례적 조치의 배경에는 데이터 주권을 명분으로 일본 및 동남아에서 플랫폼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행정 지도에는 ‘위탁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기능시키기 위한 귀사의 경영체제 재검토(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네이버의 라인 매각을 압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바 결의안의 제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지분 구조 변화와 정보 보호 강화 간 명확한 실효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시장 경제 논리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에게 사실상 강제력이 미치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사후 구제가 어려운 ‘행정지도’의 형태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음.
- 라인 야후의 한국법인인 라인 플러스 직원 고용 불안 문제와 한국의 대표 종합 IT기업으로서 향후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데이터주권을 빌미로 경영권을 상실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1) 연합뉴스,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라인야후 "단기적 자본이동은 곤란", 2024.7.1.

- 또한 그간 일본 정부의 조치를 보았을 때 플랫폼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통상 미국이나 EU 등의 사례를 참조(「참고 1」)하였을 때에도 시정 조치 혹은 과징금 등의 제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황정아의원안의 주문 중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하 외교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결의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존중함. 다만, 정부는 동 사안 관련 네이버클라우드 침해사고 접수 및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직후마다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하여 옴.
- 일본 정부에도 직접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는 입장을 확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일본 관계 기업(라인야후, 소프트뱅크)이 실적발표(각각 5.8, 5.9.)를 계기로 발표한 입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당사자인 기업들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5.10.)
-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는 “일본 정부도 수차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발표되는 경우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브리핑함.(5.14.)

○ 동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경영상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필요시 라인야후의 정보보안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네이버에 기술적·행정적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나갈 예정임.

- 한일 정부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 정부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동 건에 있어서 사태 초기부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결의안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외교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일측과 각급에서 소통해 왔음.

-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²⁾
- 아울러, 일측 행정지도가 한일 투자협정 등 제반 국제투자규범을 위반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한일 투자협정에 따른 협의 추진에 대해서는 일측 추가조치 등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음.
- 한편, 외교부는 이해민의원안의 주문 중 아래의

○ (...) 일본 정부는 라인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 문제가 되니 그 근거를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까지 새로 통과시키며 라인야후 강탈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 제4조제1항(비밀의보호)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 유출로 확인하고, 통신의 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의 확보 철저에 대한 서면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라인

2) ※ 한일 정상회담(5.26)/ 장관, 주한일본대사 접견(5.10)/ 2차관, 주한일본총괄공사(대사대리) 면담(5.17)/ 1차관,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5.17)

야후 사태를 염두에 두고 그 근거를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본다”는 입장임.

○ 또한 외교부는 황정아의원안의 주문 중 아래의

- (….) 일본 정부는 라인에 대한 총무성 행정지도의 목적이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자본 관계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행정지도에는 ‘경영 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하여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
- (….) 1.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 대외 공개되어 있는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탁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기능시키기 위한 귀사의 경영체제 재검토(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그간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안 대책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이며 민간에서 적의 판단할 문제로서 자본관계 재검토는 하나의 예시라는 취지로 설명해 오고 있다”는 입장³⁾임.

3) ※ 외교부에 따르면 관련 일본 정부 각료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하야시 요시마사 日 관방장관(5.15),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마쓰모토 다케아키 日 총무상(5.10), (행정지도에 대해) 경영권의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며, 행정지도는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임.

- 또한 일본의 라인 야후 행정지도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라 결의안에 기술하는 것은, 위반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측의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종합해 보면 두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와 과기부 및 외교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페이스북, 미국 FTC 합의 위반〉

□ 사건경과

- (정보수집)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에게 설문지작성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16년 미국 대선 선거 캠페인에 활용
- (사건 조사) 미 FTC(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측에 자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조사 실시(18.3월)

□ 위반사항

- FTC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합의안*을 위반했다고 판단
- * 12년에 FTC와 페이스북 간 합의문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때마다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법으로 공지해야 하며, 페이스북 이외에 외부로 콘텐츠 등을 유통할 때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합의
- 또한, 2단계 인증에 필요하다는 수집한 이용자 전화번호를 광고 목적에 사용한 것도 FTC의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 처분내용

- FTC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매년 회사가 전체적인 FTC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함(19.7월)
- 분기별로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하고, 페이스북 외부에서는 FTC가 승인한 독립적인 감정인이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분기마다 ‘사생활 보고 위원회’에 보고
- 페이스북은 500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FTC가 승인한 감정인에게 통지

<인스타그램, 아일랜드 아동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사건경과

- (정보 유출) DPC(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관)는 인스타그램이 사용자 20%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 착수(21.4월)
- (계정 변경) 아동 사용자 상당수가 게시물 조회 수 및 방문자 수 확대에 유리한 비즈니스 계정으로 변경하면서, 인스타그램은 연락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음
- (사건 조사) DPC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등록 과정과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는 아동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 위반사항

- 조사 결과, DPC는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주체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개인정보가 개인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GDPR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1. 개인정보는

- (a) 정보주체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c).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타당하며,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데이터 최소화')

GDPR 제12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1. 컨트롤러는 처리와 관련한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일체의 정보,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문 및 제34조에 규정된 일체의 통지를 정확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명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할 때 더욱 그러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서면이나 적절한 경우, 전자수단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GDPR 제13조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 1. 정보주체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 (c) 해당 개인정보의 예정된 처리의 목적뿐 아니라 처리의 법적 근거
 - (e)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

□ 처분내용

- DPC는 인스타그램 위반 행위에 대해 4억 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종 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 시정을 명령(22.9월)